

『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 정책 추진과 지원체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인구정책사업, 조사 및 연구,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 ~ 제8조)
-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9조 ~ 제17조)
-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등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, 인구정책사업 추진, 인구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며,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등 인구 감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